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(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일부개정령안 - 법무부)

1. 국가소송의 세부 절차에서 ‘검찰청’ 을 ‘공소청’ 으로 개정(안 제3조, 제6조, 제11조, 제19조, 제22 내지 24조, 제29조, 제33조, 제34조, 제35조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공소청법 제4조 제6호에 따라, 국가소송절차의 수행과 관련된 검사의 직무가 공소청 검사의 직무가 됨에 따라 종래 ‘검찰청’의 업무를 ‘공소청’의 업무로 개정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국가소송의 수행, 집행 및 보고 등의 절차에서 ‘검찰청’을 ‘공소청’으로 개정(안 제3조, 제6조, 제11조, 제19조, 제22 내지 24조, 제29조, 제33조, 제34조, 제35조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개정 정부조직법 및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국가소송 업무처리의 연속성 확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2. 국가소송절차 중 ‘지방검찰청의 검사장’ 을 ‘지방공소청장’ , ‘고등검찰청의 검사장’ 을 ‘광역공소청장’ 으로 개정

[안 제18조의2, 제19조, 제21조, 제25조, 제28조, 제34조]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상위 법령에서 기존의 ‘고등검찰청 검사장’을 ‘광역공소청장’으로, ‘지방검찰청 검사장’을 ‘지방공소청장’으로 개정함에 따라, 국가소송절차 관련 규정 개정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소송진행상황 보고, 상소, 확정기록 송부, 가집행, 임의변제상황 보고 및 송무통계보고 절차에서 ‘지방검찰청의 검사장’을 ‘지방공소청장’, ‘고등검찰청의 검사장’을 ‘광역공소청장’으로 개정(안 제18조의2, 제19조, 제21조, 제25조, 제28조, 제34조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개정 정부조직법 및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국가소송 업무처리의 연속성 확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3. 관련 별표 및 별지 서식 정비

[안 제18조의2, 제19조, 제21조, 제25조, 제28조, 제34조]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관련 별표 및 별지 서식 정비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관련 별표 및 별지 서식 정비(별표안, 서식안 제1 내지 3호, 제8 내지 10호, 제32호, 제34호의2, 제34호의3, 제35 내지 35호의4호, 제38호, 제39호, 제41호의2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개정 정부조직법 및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국가소송 업무처리의 연속성 확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